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63

발의연월일: 2020. 7. 24

발 의 자:전혜숙·설 훈·김철민

안규백 · 고용진 · 김병기

진성준 · 정청래 · 김병욱

윤후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시·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 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.

시·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,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.

이에 시·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.

낮은 의정활동비는 특히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있음.

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·군·구

의회 의원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33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비용의"를 "비용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"로 한다.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 외의 소득(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말한다)이 없는 만 60세 미만인 시·군·자 치구의회의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	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
	외의 소득(「소득세법」 제4조
	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
	말한다)이 없는 만 60세 미만
	<u>인 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에 대</u>
	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
	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
	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<u>②</u>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<u>비용</u>	<u>③</u> <u>비용</u>
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	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
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	
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	
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	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	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